

건설기계 등록 · 검사증				
발급번호:		최초등록일:		제작년도:
등 록 사 항	건 설 기 계 의 표 시			
	건설기계명		등 록 번 호	
	형 식		규 격	
	원동기형식		차대일련번호	
	사용본거지			
	소 유 자 의 표 시			
	성 명(법인명)		주민(법인)등록번호	
	주 소			
위 건설기계는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 및 제13조에 따라 등록 및 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시 · 도지사 직인				
※ 1. 사용본거지는 비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를 말하며, 영업용 건설기계의 경우 대여사업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합니다. 2.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(법인)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				

1. 주 요 제 원			
형식승인번호 :			
길 이	mm	너 비	mm
높 이	mm	총 중 량	kg
주행방식		정격출력	PS/RPM
기 통 수	기통	연료종류	
2. 저 당 권 등 록 사 실			
구분(설정 또는 말소)	일자		
* 그 밖의 저당권등록의 내용은 건설기계등록원부(을)를 열람 ·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
3. 작 업 장 치	
※ 기종별 작업장치 표시	
최고속도(90km/h) 제한장치	설치 ()
대형건설기계 표지	설치 ()
※ 대형건설기계는 도로운행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거나, 운행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분해 후 이동해야 합니다.	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(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)까지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.
-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(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날부터 2개월)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등록 말소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과태료 최고 50만원).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300만원).

건설기계등록·검사증**시 · 도 지 사**

4. 건 설 기 계 검 사 란					5. 등 록 사 항 변 경 란			
구 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 성명	연 번	변경일자	변경사항	확 인
신규등록일 :								
* 주의사항: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. *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,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								